교수학습센터운영규정 5-1-35

규정번호 5-1-35
제정일자 2018.8.27
최근개정 2024.10.21
개정차수 7차 개정
관리부서 교수학습팀

[규정명칭 변경 2022.6.8.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수학습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9.02.25., 2022.06.08)

제2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(개정 2019.02.25.)

1. 혁신적 교수학습 관련 방법연구·개발·지원을 통한 교수·학습역량 강화(개정 2024.5.3.)
2. 기초, 전공, 창의학습 등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·운영을 통한 학습역량 강화(개정 2024.5.3.)
3. <삭제(2022.08.08.)>

제3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개정 2019.02.25.,2020.02.17., 2024.5.3)

1. 교수 ·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법 연구 · 연수 지원(개정 2024.10.21.)
2. 교수 · 학습역량 진단 및 강화 프로그램 개발 · 운영(개정 2024.10.21.)
3. 기초학습능력 및 학업저성취자 중점 학습능력 프로그램 개발 · 운영(개정 2024.10.21.)
4. 교수 ·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과 공유 · 확산(개정 2024.10.21.)
5. <삭제(2024.5.3.)>
6. <삭제(2024.5.3.)>
7. <삭제(2024.5.3.)>
8. <삭제(2022.08.08.)>
9. <삭제(2022.08.08.)>
10. <삭제(2022.08.08.)>
11. <삭제(2022.08.08.)>
12. 소관 업무에 대한 평가 · 분석과 환류
13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

제4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(개정 2019.02.25., 2020.02.17., 2024.5.3)

③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담당할 직원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9.02.25.)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운영위원

회를 둔다.(개정 2019.02.25.,2020.02.17., 2022.08.08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20.02.17.)

1. 센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운영 프로그램 성과 및 환류
3. 연도별 부서 사업의 품질관리
4. <삭제(2022.08.08.)>
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학습센터장(이하 '센터장')을 당연직으로 한다.(개정 2020.02.17.,2022.06.08)

④ 위원회는 기획실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산학협력처장, 대학혁신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관련 부서 및 외부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포함 11명 이내로 구성한다.(개정 2020.02.17.,2022.02.21)

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(개정 2020.02.17., 2024.5.3)

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각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실무자를 간사로 둔다.

제6조(기타위원회) 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 시, 주요 업무별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(개정 2019.02.25., 2020.02.17., 2024.5.3)

② 위원회 구성 시 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되며, 위원은 9명 이내를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별도 지정한다.(개정 2020.02.17., 2024.5.3)

③ <항 삭제 2019.02.25.>

제7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우리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육개발센터운영규정, NCS지원센터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 "교육개발·NCS지원센터운영규정" 명칭을 "교육혁신지원센터운영규정"으로 변경한다.

제1조의 "교육개발·NCS지원센터"을 "교육혁신지원센터"로 변경하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14> (생략)

<15> 교수학습센터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규정명칭 및 제1조의 "교육혁신지원센터"를 "교수학습센터"로, 제5조제3항의 "교육혁신지원센터장"을 "교수학습센터장"으로 변경한다.

<16> - <25> (생략)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3호, 제3조제8호~제11호, 제5조, 제5조제2항제4호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1호·제2호, 제3조제1호~제5호, 제4조제2항, 제5조제5항제6조제1항·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1호~제4호)